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의 법적 쟁점과 전망

이 서 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NPT는 2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회 또는 수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4월 17일 ~ 5월 12일로 예정된 연장 및 검토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장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 | 난 1970년부터 발효되어 온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은 범세계적 핵확산 금지체제(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의 핵심적 국제협정으로서, 기존 핵무기보유국(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폭발 장치를 제조·성공시킨 美·러·英·佛·中 5개국)으로 하여금 핵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의 양도·지원을 제한하고, 핵비보유국에게도 핵무기는 물론 핵무기 제조관련 장치의 접수·생산·획득을 금지케 함으로써, 이른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 그동안 국제안보 및 안정에 크게 공헌해 왔다.

연장조항의 성립배경

NPT는 2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

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회 또는 수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4월 17일 ~ 5월 12일로 예정된 연장 및 검토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장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NPT 연장문제와 관련한 이 조약의 제10조 2항(Article X.2) 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무기한으로 조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회 일정기간 또는 수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 연장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결정은 조약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장문제와 관련한 상기조항은 다른 어떤 국제조약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하며, 만약 NPT가 무기한으로 연장되지 않고 일정기간

연장될 경우 구체적인 연장기간 및 연장기간 종료 이후의 NPT 효력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해석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 11월 17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NPT 제10조 2항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 각 당사국들이 이 조항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유엔에 제출하고, 유엔사무총장이 이를 1995년 연장회의 개최 이전에 회의 배경문서로 편성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연장회의에서 당사국간의 심각한 의견 차이로 구체적 연장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NPT가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의 여부 등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본래 NPT 발효 25년 후 연장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한 NPT 제 10조 2항은 1962년 ~ 1968년 유엔군축회

(표) NPT의 구성과 주요내용

조 문	내 용	주 요 사 항
전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무기 확산에 의한 핵전쟁 위험증대 경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응용강화 ○핵무기제조 중지, 현존 핵무기 및 운반수단 제거 촉진
제 1 조	핵보유국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보유국에 의한 핵무기 및 폭발장치의 이양·개발·지원금지
제 2 조	핵비보유국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제조·획득·원조추구 금지
제 3 조	안전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비보유국의 IAEA 안전조치 협정 체결
제 4 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조치 미체결시 핵물질 또는 장비제공금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생산 및 이용개발 권리 인정 ○평화적 원자력의 이용을 위한 설비·자재·기술정보 교환
제 5 조	평화적 핵폭발 응용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에서 파생되는 이익의 핵비보유국 제공
제 6 조	핵군축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군비감쟁 중지 및 핵군축협상 성실이행
제 7 조	비핵지대 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핵지대 설치 권리 인정
제 8 조	개정 및 검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NPT 개정의 핵보유국 전원 및 당사국 과반수 이상 찬성 필요 ○5년간격 검토회의 개최 ○40개국 이상 비준 필요
제 9 조	서명·가입·비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보유국기준 설정
제 10 조	탈퇴 및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 최고이익 위협시 탈퇴가능 ○발효 25년 경과 후 연장회의 소집
제 11 조	정본 및 기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국어 정본 및 기탁국 문서 보관

의(CD)의 전신이 되는 「18개국 군축 회의(ENDC : Eighteen Nation Disarmament Conference)」에서의 NPT협상시,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 국가와 이탈리아 등 핵비보유국간의 타협책으로 삽입된 조항이다.

당시 ENDC의 공동의장국인 미국과 소련은 핵보유국은 핵무기 보급을 완전 금지하고(non-dissemination) 비핵국은 핵무기 획득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non-acquisition)을 주요 내용으로 NPT 시안 작성시 그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지속(unli-

imited duration)」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핵무기 국가가 핵군축은 시행하지 않으면서 NPT를 무제한 지속시키는 것은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을 영구히 분할시킬 수 있다는 이탈리아 등 일부 핵비보유국의 주장을 감안, 핵보유국의 핵군축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속 후 가급적 연장될 수 있도록 상기 조항 형태로 절충한 것이다.

다시 말해 NPT에 대한 제한기간을 두되 반드시 연장회의가 개최되도록 타협된 것이며, 이에 따라 NPT 지속

기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25년 후로 연기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NPT의 장래는 기본적으로, 첫째, 1회에 한해 일정기간 연장되는 방안, 둘째, 수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 연장되는 방안, 셋째, 무기한 연장되는 방안 등의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NPT 가입국가가 증가하면서 제10조 2항의 초기 의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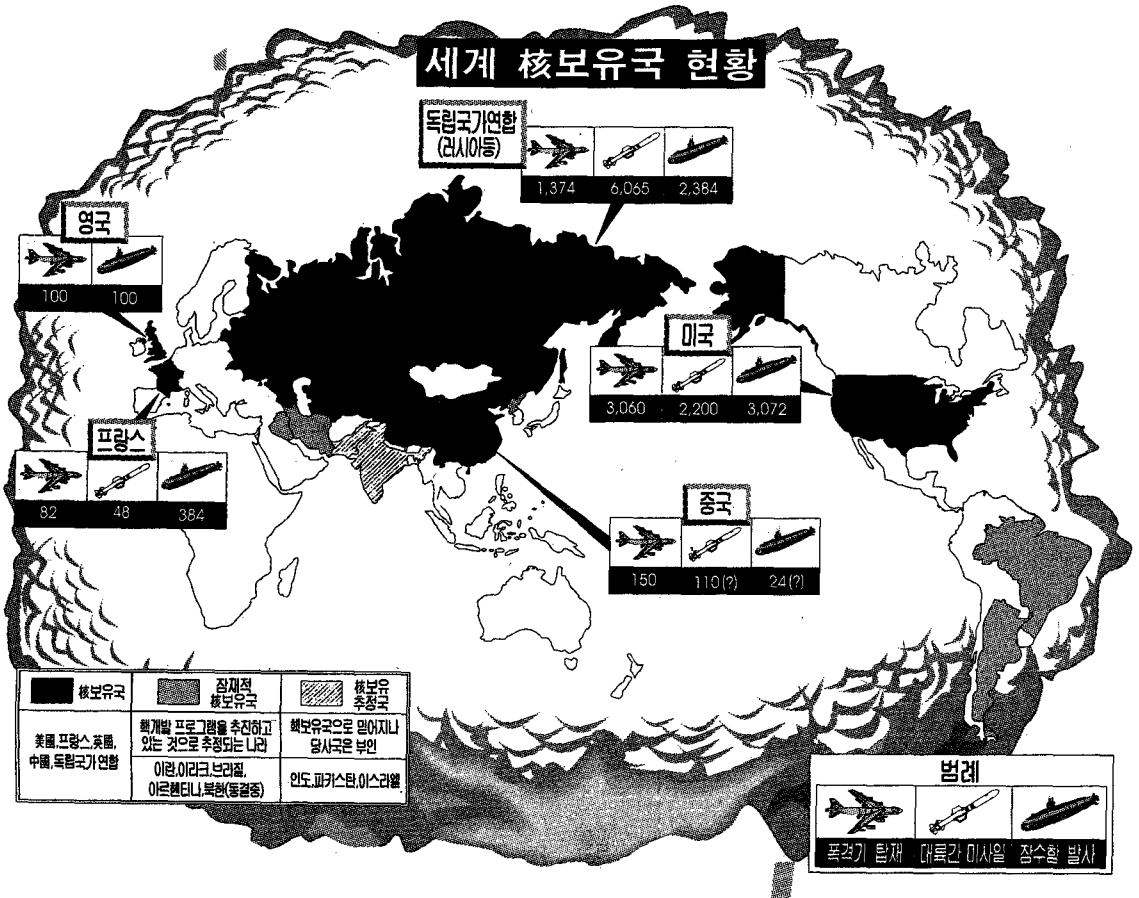
근본적으로 NPT가 일정기간 연장될 경우 종료되는 방식과 조약 종료후 국제안보와 평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NPT 연장의 세가지 가능한 방안

NPT 제10조 2항에 따른 기본적인 세가지 가능한 연장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회 일정기간 연장

1회 일정기간 연장(Extension for an Additional Fixed Period)은 멕시코 등 일부 소수 국가가 주장하는 것으로, 이들은 NPT 발효 이후 제6조에 따른 핵보유국(특히 영·불·중)의 핵군축협상 성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핵실험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 1회에 한해 10년 내지 15년 연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연장이후의 결과를 예측해 보면, NPT 제10조 2항은 발효 25년 후 연장결정이 내려진 다음 추가 연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1회 일정기간 연장이 결정된다면 이 기간 이후에는 NPT가 자동만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제법 이론가들에 따르면, NPT 당사국은 다수의 합의로 1회에 한한 연장기간 만료시 현재 제10조 2항상의 3가지 연장조건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 조항에 의하

면 NPT는 1회 연장된 후에는 자동만료되는 것이 정설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NPT의 중요성에 비추어 1회 한한 일정 기간, 특히 5년 또는 10년의 단기간 연장은 NPT 연장 방안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즉 NPT 종료 후 핵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또한 1회 연장 이후의 추가연장 결정을 위해서는 NPT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서는 오랜시간이 걸린다(NPT가 中·佛 등 주요국가를 포함한 절대 다수국의 비준 및 가입을 받기 위해서는 20여년이 소요됨).

또한 NPT 개정도 당사국 과반수 이외에 5개 핵 보유국 및 NPT 이사국의 동의를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회에 한한 일정기간 연장은 소수국가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수회에 걸친 일정기간 연장

수회에 걸친 일정기간 연장(Ex-

tension for Additional Fixed periods) 방안은 수회에 걸쳐(예 : 5 회) 자동적으로 일정기간(예 : 매 5년 간 총 25년)동안 NPT를 연장하는 것으로, 핵보유국 및 서방측 국가를 제외한 다수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방안은 추가 연장회의 개최가 합의되어 NPT가 개정되지 않는 한 초종회의 연장기간 종료 이후에는 소멸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매회 연장기간에서 다음 회로 연자될 때의 '移行 메카니즘(transi-tion mechanism)'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각회의 연장기간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핵군축 등 일정조건 이행과 다음 회로 연장기간을 이어가는 것과의 연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국가는 NPT 이외의 조건, 예를 들면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상(CTBT)의 타결과 다음 회로의 연장을 연계시키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수 회에 걸친 자동적인 일정기간 연장은 1회의 장기간 연장과 사실상 동일한 법적 효과를 지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제(즉 25년간 유효, 매5년마다 검토회의 개최)대로의 연장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3. 무기한 연장

무기한 연장(Indefinite Extension) 방안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핵보유국과 다수의 서방측 국가들(주로 G-7, EU, NATO, OSCE 국가)이 주장하는 NPT 연장방안으로, 1993년 1월 채택된 화학무기금지협정(CWC) 등 일부 군축관련협정과 마찬가지로 무기한으로 현행 조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이다.

만약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NPT는 오직 모든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다.

특히 미국 등 서방측 국가들은 NPT가 핵확산방지는 물론 핵군축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근간이 되어 온 점을 지적, 무조건적인 무기한 연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NPT는 세계평화에 대한 그 자체의 기여와 역할을 감안해 연장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비동맹그룹국가 및 무기한 연장을 찬성하는 국가들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대부분 국가들은 NPT가 핵보유국의 일방적 우위를 강조하는 차별적 협정임을 감안, 핵실험금지(CTBT) 및 핵군축실행,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금지(NS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정보교환 강화를 포함한 실질문제의 해결을 NPT 무기한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NPT 연장의 장애

NPT 연장문제에 대해 국가간의 정책이 서로 다르고 NPT 장애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NPT의 국제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공헌은 인정하되, 조약이 규정한 조문상의 특정한 의무나 권리가 제대로 이행·보장되지 않은 불만과 중동과 같이 특정국가가 NPT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빚어지는 일부지역의 특별한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동맹그룹 또는 제3세계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은 NPT 제6조가 규정한 핵보유국의 핵군축이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NPT 제6조는 핵보유국으로 하여금 핵군비경쟁의 중지 및 핵군비감축을 위한 협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것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들에 의한 핵실험은 NPT 발효 후에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NPT는 핵실험 또는 핵무기의 기술진전과 관련된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 방지 보다는 핵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 또는 핵확산 자체를 막는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방지에 치중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NPT는 「차별적」 또는 「비대칭적」인 국제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이 연장문제에 대

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상(CTBT)은 이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최근 CTBT 협상의 부진은 NPT 연장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국가는 「CTBT 타결-NPT 연장의 연계」까지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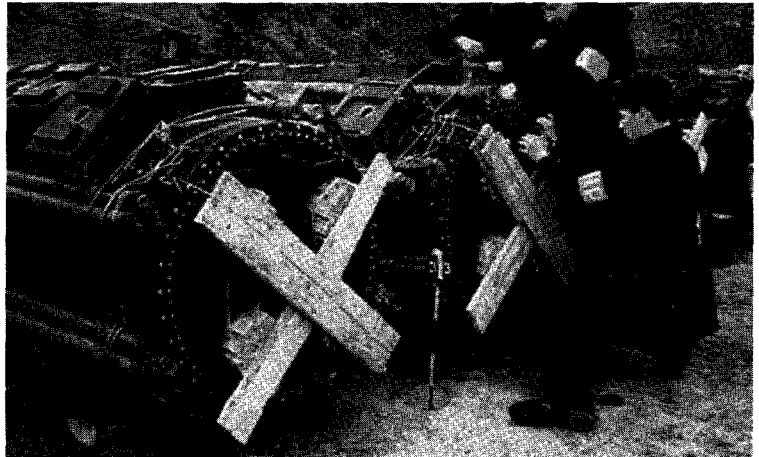
둘째, 일부 핵비보유국들은 현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들이 제공하는 핵무기와 관련한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이 불충분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NPT 연장결정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는 문제는 NPT 체결시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미·영·러 3국은 1968년 6월 19일 UN안보리 결의 제255호를 통해 「비핵국이 핵국으로부터 핵공격 또는 핵사용 위협을 받을 시에는 즉시 지원·보호한다」라는 이른바 '적극적 안전보장(PSA : Positive Security Assurance)'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핵비보유국들은 PSA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소위 '소극적 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으로 불리는 핵무기 불사용 의무(Non-Use Obligation)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핵국들은 1978년 유엔군축 특별총회시 핵보유국이 개별적인 선언



현재 NPT연장은 수처상(국가수) 핵군축 등을 전제로 한 연장방안이 우세하다.

형식으로 취한 NSA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국제협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NPT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비동맹그룹을 포함한 다수국가들은 NPT 제4조가 규정한 핵보유국의 비핵국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이용을 위한 설비·자재·기술정보교환 지원이 부족했음을 강조하고 이의 지원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설비·자재·기술정보교환 지원이 '핵비확산'이라는 이름아래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지적, 이의 대폭적인 개선을 NPT 연장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특정지역의 사태가 다수국가로 하여금 NPT 연장에 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저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핵제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다수 아랍국가들로 하여금 NPT의 무기한 연장 또는 상당기간 연장의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설득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NPT 가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연장문제에 관한 아랍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요인이 NPT 연장결정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NPT 연장에 관한 국가간 이견의 근원이 되고 있다.

연장관련 주요 법적 쟁점

핵군축 이행의 부진, 핵관련 안전보

장의 미흡, 평화적 목적의 기술정보지원 및 교환 저조, 특정국가의 NPT 미가입 등이 다수 비핵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NPT 연장의 불만요인이나, 실제로 NPT 연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 연장결정 실패시 NPT 효력 유지 문제

NPT 연장에 관해 적어도 3가지 방안이 존재하고 각국의 주장이 다양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만약 과반수에 의한 연장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다든지, 또는 회의 자체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발효 25년이 지난 1995년 이후 NPT의 효력 유지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수 국제법 학자들은 NPT 제10조 2항의 근본의도가 NPT 연장을 전제로 타협된 것일 뿐만 아니라 10조 2항 자체가 조약 연장방식만을 결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종료(expire)」라는 용어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장에 관한 어떠한 「결정(decision)」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NPT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NPT 제10조 2항의 근본의도는 조약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더 연장할 것인가」가 핵심이므로 연장회의에서 특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NPT는 즉각 종

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에 대해 연장회의가 개최되면 NPT연장에 관한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회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내(예를 들면 NPT 검토회의 개최시기인 5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NPT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두 주장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연장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NPT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문제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이 NPT 제10조 1항상의 조건(자국의 최고이익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관계없이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NPT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2. 연장결정 방식

NPT 제10조 2항은 조약연장 결정을 「과반수(Majority)」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얼마만큼 당사국의 지지를 받느냐도 NPT의 장래와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명목상의 과반수(a narrow majority)」에 의해 연장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NPT의 법적 효력 및 구속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NPT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

해 가급적 회의(Consensus)에 의한 연장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면 비동맹 그룹 국가들은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3. 연장결정에 대한 당사국 비준 필요 여부

NPT 연장이 결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당사국의 추가 비준이 필요한지의 여부도 연장문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NPT 제8조 2항은 조약개정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NPT가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안에 대한 당사국의 비준서 기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소수 학자들은 NPT 연장을 조약의 개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비준서가 기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 국제법학자들은 NPT 연장결정은 조약의 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제10조 2항의 어느 부분도 연장결정을 개정과 동일시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제10조 2항은 NPT 연장이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8조 2항의 조약개정과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조항의 개정없이 NPT 연장만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준서 기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연장 및 검토 토의순서

이번에 개최될 연장회의는 NPT의 검토 및 연장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게 됨에 따라, 어느 의제를 먼저 다루느냐 하는 의제 토의순서도 회의 실질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과 서방측 국가들은 NPT의 연장문제를 우선 해결해 놓고, 나중에 핵군축 실현 등 특정 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검토문제를 논의하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비동맹그룹을 중심으로 한 핵비보유국들은 연장문제가 우선 해결될 경우, 조약검토시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검토 및 연장문제의 토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방측 국가들은 회의명칭도 「1995 NPT Conference」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동맹그룹은 「The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로 지칭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NPT 연장문제와 조약 개선을 위한 검토 중 어느 것을 먼저 다루느냐에 따라 회의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평가 및 향후 전망

지난 1993년 5월부터 이제까지 NPT 연장문제와 관련한 준비회의가 네차례 개최되었다(1차 1993. 5. 10 ~ 14, 2차 1994. 1. 17 ~ 21, 3

차 1994. 9. 12 ~ 16, 4차 1995. 1. 24 ~ 27).

그러나 1995년 2월초 현재 NPT 연장방안 및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견개진에 따른 중요 그룹간의 특히 서방그룹 대 비동맹그룹, 입장차이만 명확해졌을 뿐 합의를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2차 준비회의에서 본회의 의장으로 스리랑카의 다나팔라 대사를 선출한 바 있으며, 연장회의 의사규칙 중 회의 성립 의사 정족수에 대해서는 3차 회의에서 과반수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회의시까지 NPT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 및 실질문제 등 모든 사항은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앞으로 NPT 장래에 대한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NPT의 3가지 가능한 연장방안 중 어느 하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사국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어느 방안도 절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995년 2월 1일 현재 NPT 당사국 수가 모두 171개국이므로 특정 연장방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6개국의 지지가 요망되며, 이는 그동안 준비회의의 참가국수가 90 ~ 120개국임을 감안할 때 참가국의 70 ~ 80%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NPT 당사국의 그룹별 분포를

보면 NPT 무기한 연장을 표명한 서방측 국가들(EU, NATO, OSCE, G-7 및 기타국)이 70여개국이며, 조건부 연장을 표명하거나 서방측 방안에 반대하는 비동맹그룹·제3세계에 소속된 국가들이 약 100개국인 것으로 집계(일부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핵군축·핵실험금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일정기간 연장방안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측 국가들은 NPT 무기한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무기한 연장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로 「포괄적 핵실험금지 협상(CTBT)」의 타결이 지적됨에 따라 NPT 연장문제를 CTBT 체결 가능성이 높은 1996년 이후에 결정하지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NPT 연장은 조약자체의 효력과 관련, 다수국의 광범위한 지지가 요망되므로 투표는 가급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서방측 국가와 비동맹그룹간의 타협으로 현재제와 비슷하게 「25년 지속후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되는 방안의 채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4월 17일~5월 12일에 열릴 예정인 연장회의에서 연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속개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 논문은 지난 2월 24일에 열린 한국원자력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이다.